

【 5 】 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출연월일 : 2008. 3. .

제출자 : 양주시장

□ 제안이유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중 오수·분뇨 분야가 「하수도법」으로 통합, 전부개정되어 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준설, 하수도 사용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및 분뇨·오수등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한 하수도 사용 조례 표준안이 시달(경기도 상하수관리과-9468, 2007.10.25)됨에 따라,
-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공공하수도 설치와 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에 관하여 정함(안 제2조)

- 하수처리구역을 공공하수도(하수관거)로부터 300미터 이내로 지정함

나. 사용개시 등의 신고에 대한 규정에 관하여 정함(안 제3조)

-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동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

다. 하수관거 준설에 관하여 정함(안 제5조)

-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의 상태를 점검하고 침수·장마 등 재해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에 관하여 정함

라. 중수도 관련규정에 대하여 정함(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 「수도법」에 규정에 “중수도” 관련조항이 「하수도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신고, 관리, 용도제한, 수질검사 규정을 신설하고 하수도 사용료 감면 규정을 마련함

마. 배수설비 유지·관리에 관하여 정함(안 제13조)

- 배수설비 설치자가 개인하수도 시설물을 시장에게 이관절차를 이행하고 승인 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하는 것으로 규정함

바.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규정을 정함(안 제19조)

- 하수처리구역안에서 건물의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 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 증가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을 1일 오수 발생량 1m³에서 10m³이상으로 완화함

사. 타공사,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규정을 정함(안 제20조, 제21조)

-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함.
-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당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함

아. 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정함.

(안 제22조, 제23조, 제24조)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중 오수·분뇨 분야가 「하수도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규정을 정함

자.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 부담금 감면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5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등으로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감면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함

양주시 조례 제 호

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양주시 하수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법 제15조 및 규칙 제7조에 따라 하수처리 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양주시 하수도 조례 시행 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급수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따른 급수사용 개시신고
 2.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지하수법」 제7조·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제4조(일시사용 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①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구비하여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②시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시설을 확인하여 중수도로 인정되는 시설분에 대해서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시설의 확장계획
2. 중수도 시설의 운전중지
3. 사업자 또는 관리자 변경

④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하여 상·하수도 사용료를 경감 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 한다.

⑤시장은 신고사항 및 중수도 시설사항 등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조(중수도의 관리)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중수도의 관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저수조는 수량 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에 의한 보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수가 수돗물과 혼합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2. 송·배수시설은 수도, 전기, 기타 배관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할 것
3. 이용설비에 “중수도 사용”이라는 표지를 할 것
4. 중수도의 운전기록 및 수질검사 등 시행규칙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기록·보관할 것

제9조(중수도의 용도제한) 중수도의 용도는 수세식화장실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 세차·청소용수 등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중수도의 수질검사) ①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수질검사의 횟수는 PH, 냄새, 색도, 탁도, 외관 및 잔류염소(결합)에 대하여는 매주 1회 이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대장균군수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이상으로 한다.

③채수장소는 중수도를 사용하는 장소로 한다.

제11조(시장의 공사시행)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 할 때
3.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률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및 일반행정 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 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비용을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 ⑤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제12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를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

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배수설비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배수설비 설치자가 개인하수도 시설물을 시장에게 이관절차를 이행하고 승인 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 한다.
- 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의한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급수조례에 의한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 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하수도 사용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부담한다.

⑤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다만, 지하수는 「양주시 지하수 조례」에 의거 부과된 지하수 이용량 및 부담금 부과 산정기준을 준용한다.

제16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 된 양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신고량
 -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7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시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산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④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8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시장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m^3/\text{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m^3/\text{일}$ 이상인 경우 $10m^3/\text{일}$ 을 초과하는 양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 : 별표 4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text{m}^3/\text{일}$ 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년 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text{m}^3/\text{일}$)에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 $\text{m}^3/\text{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따른 인허가 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 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 ② 제21조의 태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태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하게 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0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

도록 할 수 있다.

제2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당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 시행자에게 부과한다.

②제1항에 규정에 의한 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m³/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일 최대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년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③제1항에 규정에 의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④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고 준공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분뇨의 수집·운반)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함에 있어 효율적인 처리와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법 제45조제1항의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월별 정화조 청소실적을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분뇨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분뇨처리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제2호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4조(분뇨처리 수수료 징수방법 등) ① 분뇨처리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뇨처리장을 이용하는 경우에 징수한다.

1.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2. 그 밖에 시장이 처리장을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자는 분뇨처리장에 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반입량을 계근하고, 계근된 양에 따라 월별로 분뇨처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할 금액에 10원 미만이 있을 때에는 원단위는 절사한다.

③ 분뇨처리장에서 매월 통보하는 업체별 분뇨반입량에 따라 분뇨처리 수수료를 부과·징수한다.

④ 분뇨 수집운반 실적을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분뇨처리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리장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25조(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2. 제7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3.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4.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26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을 준용한다.

제27조(가산금 및 독촉)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제1항중 공공하수도 사용료 독촉 고지분은 수도요금 독촉고지와 납기를 같이 하며,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양주시중수도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② 「양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양주시 하수도 사용조례」에 의해서 부과된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점용료, 원인자 부담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양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 의한 처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4조제2항)

1.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 하수도 사용업종은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상수도 업종에 준한다.
-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기타 용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업 종	사 용 요 율	
	사용구분(m ³ /월)	m ³ 당 단가(원)
가 정 용	1 ~ 10	210
	11 ~ 20	220
	21 ~ 30	290
	31 이상	400
일 반 용	1 ~ 100	310
	101 ~ 300	390
	301 ~ 1,000	460
	1,001 ~ 2,000	550
	2,001 이상	640
대중탕용	1 ~ 1,000	300
	1,001 ~ 1,500	360
	1,501 ~ 2,000	420
	2,001 이상	480
산 업 용	0 ~ 1000	300
	1001 이상	340

주 1.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사용요율이 높은 업종의 사용요율을 적용함.

【별표 2】

수질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제14조제3항)

대상항목 : BOD 또는 COD, SS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하수도사용료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 배출허용기준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의 별도 배출허용기준과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 한다.
- BOD 또는 COD 값 중 큰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SS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폐수배출량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측정기기에 의거 산정한다.

수질하수도사용료

- 수질하수도사용료(원) = 오염부하량[수질초과농도(mg/L)×시간당 폐수 배출량($m^3/\text{시간}$)] × $\frac{1}{1000}$ (kg/g) × 1일조업시간(시간/일) × 30일 × kg단가(원/kg)

※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배출시설의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조업시간 평균치를 적용한다.

【별표 3】

공공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제18조제1항)

(365일 기준)

구 분	산 정 기 준
1. 도로, 철도, 궤도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6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3. 택지 또는 상가로 하는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4. 기타 사유로 인한 공공하수도의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8

< 계산 예 >

1.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이 100만원이고, 점용기간이 183일인 경우의 점용면적당 공공하수도 점용료는?
 $= 100(\text{만원}) \times (6/100) \times (183/365) = 3(\text{만원})$

【별표 4】

건축물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오수량 산정 예

(제19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

(오수량 : m³/일)

구 분	최초 행정행위 시 오수발생량 (A)	1차 증축·용도변경				2차 증축·용도변경			
		증가량 (B)	총오수량 (C) (A+B)	부과량 (D)	적용방법	증가량 (E)	총오수량 (F) (C+E)	부과량 (G)	적용방법
기존 건축물 의 증축 및 용도 변경	0 ※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볼	3	3	-	(B)<10 미부과	1	4	-	(B)+(E)<10 미부과
						6	9	-	(E)>10 전체부과
						12	15	12	(B)+(E)<10 미부과
						2	9	-	(B)+(E)>10 초과량부과
						7	14	4	(B)+(E)>10 초과량부과
		11	11	11	(B)>10 전체부과	11	18	11	(E)>10 전체부과
						4	15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볼
						7	18	-	
						11	22	11	
						12	20	12	(E)>10 전체부과
법시행 일 이후 신축 건축물	5 (미부과)	3	8	-	(A)+(B)<10 미부과	1	9	-	(A)+(B)+(E)<10 미부과
						7	15	5	(A)+(B)+(E)>10 초과량부과
						12	20	12	(E)>10 전체부과
		7	12	2	(A)+(B)>10 초과량부과	1	13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볼
						6	18	-	
						12	24	12	
						1	17	-	
						6	22	-	
		11	16	11	(B)>10 전체부과	12	28	12	기준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 부담금 부과량 산정
						3	16	-	
						6	19	-	
						12	25	12	
						2	19	-	
		10 (부과)	13	-	(B)<10 미부과	6	23	3	
						12	29	12	
						2	23	-	
						6	27	-	
						12	33	12	

- 주) 1. 신축 또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발생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 미부과
 2. 수화에 걸쳐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초과량부과
 3. 각각의 신축증축·용도변경 행위로 오수발생(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오수발생(증가)량 전체부과

【별표 5】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산정방식(제19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

○ m^3 당 원인자부담금

$$= \frac{\text{공공하수처리시설 총 사업비(원)}}{\text{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m^3/\text{일})} \times a$$

▷ a =

$$\left(1 + \frac{\text{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 연평균 생산자물가 상승률}}{100} \right)^n$$

▷ n :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의 경과연수

- ※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한 차집관거(간선관거)를 포함한다.] 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 ※ 관내 2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관내 전체 공공하수처리 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타 행위에 대해서는 당해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산정할 수 있다.

【별표 6】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제24조제1항)

1. 수거식화장실

부과기준	수 수 료		
	수집·운반	처리	계
10리터 당	108원	14원	122원

2.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구 분	수 수 료		
	수집·운반	처리	계
기본요금 (750리터까지)	13,912원	750원	14,662원
초과요금 (100리터마다)	854원	100원	954원

- ※ “수집·운반”은 분뇨의 수집·운반(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경우 청소 포함)수수료를 말함
 ※ “처리”는 분뇨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의 유입 처리 수수료를 말함

【별표 7】

**중수도·하수처리수 재이용수 사용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제25조 제2항)**

업종	구분		감면비율(%)	
	중수도	재이용수		
가정용	30	30		
일반용	"	"		
대중탕용	"	"		
산업용	"	"		

주) 감면비율은 공공하수도사용료를 기준으로 감면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 계산 예 >

1. 하수도사용료가 100원이고 감면비율이 30%인 경우 최종 하수도사용료는 ?

$$= \text{하수도 사용료}(100\text{원}) - \text{감면액}(100\text{원} \times 30\% = 30\text{원}) = 70\text{원}$$

(최종 하수도사용료)

【별지】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제12조제1항)						
설치자	법인명					
	성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시공자	법인명					
	성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배수설비현황	주소					
	설치목적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배제				
설치위치	시 읍·면·동 번지(통반)					
관종	PVC관, PE관, 흠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관경	ø mm	연장	m	접속방법	(하수관, 맨홀, 타배수설비, 기타)에 접속	
배출수량	m ³ /일		※ 제18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배수설비기부채납여부	양주시에 기부채납(토지 경계부터 공공하수도까지)					○, ×
준공검사	검사항목			1차 검사	2차 검사	비고
				검사일자 (. .)	보완사항	
	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 지하수침투여부, 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					
	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					
	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					
	5. 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					
	6. 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					
7. 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의 기준 준수여부						
검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3. 배출수량 산출근거 4. CCTV 촬영 보고서(필요시)						수수료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1>

- 「하수도법」 제15조, 제16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 제41조, 제45조, 제61조, 제65조, 제73조
-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7조, 제23조
- 「지하수법」 제7조, 제8조
- 「건축법」 제18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3조, 제38조, 제38조의2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사전예고결과 : 제출된 의견 없음(2008. 2.11 ~ 2008. 2.25까지) 의원간담회 제시의견 반영 결과 : <별첨 2> 관련 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하수도법령 주요 개정내용 : <별첨 3> 환경부 시달 하수도 조례 표준안 : <별첨 4> 기타참고사항 : <별첨 5>

- 「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현행조례(전문)
- 「양주시중수도운영조례」 현행조례(폐지대상)
- 「양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현행조례(폐지대상)

〈별 첨 1〉

관계법령 발췌서

【하수도법】 - 일부개정 2007.12.27 법률 제8820호

제15조 (사용의 공고 등)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개시 시기, 배수구역(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그 하수 처리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합류식하수관거 및 분류식하수관거의 현황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관계도면을 일반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제16조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유지는 허가 없이 이를 할 수 있다.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4조 (점용허가)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용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6조 (중수도의 설치) ①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건축되는 부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자 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용수량의 100분의 10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는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부터 재이용수를 사용수량의 100분의 10이상 공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숙박업

- 또는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건축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장으로서 1일 폐수배출량이 1천5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인 시설물
- ②중수도의 시설기준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따른 사용수량의 기준, 동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 연면적, 폐수배출량의 산정기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③국가는 중수도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
- ④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물을 신축하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 제27조 (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또는 국·공유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에게 그 배수설비의 시공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옥내의 배수설비 공사
 2. 배수설비의 준설·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배수설비의 유지·관리 공사
-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배수설비의 종류·규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질 또는 수량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고자 하는 자는 당해 하수의 수질 또는 수량, 배수설비의 사용개시 예정일자 등에 관한 사항을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 신고를 하는 때에 함께 신고를 하여야 한

- 다. 신고한 하수의 수질 또는 수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의무자가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유지·관리할 수 있다.
- ⑦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하여는 「건축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제외하고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 제41조 (분뇨처리 의무)**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②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오지·벽지 등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③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행하는 자 및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그 화장실에서 배출되는 분뇨(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스스로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④시장·군수·구청장은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도지사가 그 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그 수집·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⑤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집·운반된 분뇨에 대하여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중단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 (분뇨수집·운반업) ① 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운반하는 영업(이하 "분뇨수집·운반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하기 전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의 적합 여부를 미리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허가의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구역 또는 영업대상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이하 "분뇨수집·운반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분뇨수집·운반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61조 (원인자부담금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킬 수 있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

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5조 (사용료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개시의 공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징수할 수 없다.

제73조 (강제징수)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자가 있을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하수도법 시행령】 - 일부개정 2008. 1.11 대통령령 제20544호

제24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①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 또는 처리용량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구조
3. 개인하수처리시설 본체의 교체

②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하수처리구역 밖
 - 가. 1일 오수 발생량이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시설 등(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할 것
 나. 1일 오수 발생량 2세제곱미터 이하인 건물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

(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등에 설치한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것

2. 하수처리구역 안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를 설치할 것

- ③ 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 1과 같다.
- ④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또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에서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거나 1일 오수 발생량이 1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 2007.12.28 환경부령 제262호

제7조 (하수처리구역의 지정기준)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15조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을 하수관거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되, 하수처리구역의 지정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 등) ①법 제27조제7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수설비는 공공하수도 또는 다른 배수설비에 연결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가설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운반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배수설비는 철근콘크리트, 경질염화비닐, 도기, 그 밖에 내구성과 내부식성(耐腐蝕性)이 있는 자재를 사용하고 수밀구조(水密構造)로 할 것
 3. 분류식 하수도에 연결하는 배수설비는 오수(汚水)와 우수(雨水)가 분리되어 흐를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4. 배수설비를 공공하수도에 연결시킬 때에는 오수관과 우수관을 잘못 연결하는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② 배수설비는 제1항의 기준 외에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가설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를 통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1.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 등의 위치도
2.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수집·운반하는 계획

④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고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지하수법】 - 일부개정 2007. 5.17 법률 제8466호

第7條 (地下水開發·利用의 許可) ① 地下水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市長·郡守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3.31,
2005.5.31>

1.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시행하는 사업 등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지하
수를 이용하는 경우
2. 動力裝置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家庭用 우물 또는 공동우물을 개발·이용하
는 경우
3. 第13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경우
4. 삭제 <2001.1.16>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申請하고자 하는 者는 第27條의 規定에 의한
地下水影響調查機關이 실시하는 地下水影響調查를 받은 후 地下水影響調查機
關이 작성한 地下水影響調查書를 제출하여야 하며, 市長·郡守는 大統領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地下水影響調查書를 審查하여 그 결과를 許可內容에 반영하
여야 한다. 이 경우 市長·郡守는 기본계획 및 지역관리계획을 고려하여 심사
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01.1.16>

③ 市長·郡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를 하지 아니하거나 取水量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9.3.31, 2002.2.4,
2005.5.31>

1. 地下水의 採取로 인하여 隣近地域의 水源의 枯渴 또는 地盤의沈下를 가져

을 우려가 있거나 周邊施設物의 安全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地下水를 汚染시키거나 自然生態系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지하수의 적정관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그 밖에 공공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타 地下水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

④市長·郡守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申請人에게 그 사유를 書面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⑤市長·郡守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함에 있어서 특히 地下水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竣工検査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99.3.31, 2001.1.16>

⑥第1項 내지 第5項의 規定은 許可받은 사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다만,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지하수개발·이용이 제8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지하수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5.5.31>

⑦第2項의 規定에 의한 地下水影響調查의 項目·調查方法·評價基準, 地下水影響調查書의 作成指針·작성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8條 (地下水開發·利用의 申告) ①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7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市長·郡守에게 申告하고 地下水를 개발·이용할 수 있다.<개정 1999.3.31, 2001.1.16, 2005.5.31>

1. 「國防·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第2條의 規定에 의한 國防·軍事施設事業에 의하여 設置된 施設에서 地下水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2.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農業 및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漁業을 영위할 목적으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 이하로 地下水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3. 災害 기타 天災·地變으로 인하여 긴급히 地下水를 개발·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市長·郡守가 인정하는 경우
4. 戰時 기타 非常事態의 발생에 대비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非常給水用으로 地下水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5. 第1號 내지 第4號외의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 이하로 地下水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사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市長·郡守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한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지하수개발·이용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3.31, 2005.5.31>

③市長·郡守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地下水開發·이용이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실시한 지하수영향조사를 받아 그 결과를 토대로 취수량 및 취수기간을 제한할 수 있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是正命令 또는 이용중지·공동이용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개발·이용시설의 閉鎖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1.1.16, 2005.5.31>

【건축법】 - 일부개정 2007.10.17 법률 제8662호

第18條 (建築物의 사용승인) ①建築主는 第8條·第9條 또는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았거나 申告를 한 建築物의 建築工事を 완료(하나의 基地에 2이상의 建築物을 建築하는 경우 棟別工事を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建築物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第21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工事監理者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 한한다) 및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許可權者에게 사용승인을 申請하여야 한다.<改正 1995.1.5, 1999.2.8, 2005.11.8>

②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5.11.8, 2007.10.17>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2007. 5.17 법률 제8466호
 제32조 (배출허용기준) ①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령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시·도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례로 제1항의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3조·제37조·제39조 및 제41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7.5.17>

④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변경된 때에는 이를 자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환경부장관은 특별대책지역 안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 안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고, 당해 지역 안에 새로이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시·도 안에 당해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 안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도 조례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5.17>

1. 제3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2. 환경부령이 정하는 배출시설 중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거나 전량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⑧환경부장관은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그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항목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3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외의 사항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 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 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변경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제3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변경을 포함한다)를 제한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환경부장관은 지역별 제한대상 시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경부령이 정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로서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서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⑧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및 시설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⑨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5.17>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

2. 다른 법령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3.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유출·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전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제38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①사업자(제33조제1항 단서 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를 제외한다)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 중에서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환경부장관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석하여야만 수질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그 밖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제38조의2 (측정기기의 부착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제12조제3항 또는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산전력계·적산유량계·수질오염물질 배출농도 측정기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기(이하 "측정기기"라 한다)를 부착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수배출량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 다만, 제33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를 제외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처리용량 이상의 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을

운영하는 자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처리용량 이상의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

②제1항에 따라 부착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부착방법, 부착시기 및 그 밖에 측정기기의 부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5.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 2007.12.28 환경부령 제262호

제34조 (배출허용기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별 첨 2〉

의원간담회 제시의견 반영결과

- 조례안 명칭을 「하수도 사용 조례」로 하였는데 조례안 내용중에 중수도, 분뇨수집 등 하수도 사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하수도 조례」로 조례안 명칭 변경
 - 기존 조례는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를 위해 제정되었으나 상위법인 「하수도법」에 중수도, 오수·분뇨 분야가 통합되어 하수도 사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중수도, 분뇨수집·운반 등)이 반영됨에 따라 「하수도 사용 조례」를 「하수도 조례」로 제명 수정

<별첨 3>

하수도법령 주요 개정내용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중
 오수·분뇨관련 규정을 「하수도법」에 통합
 - 현행 「하수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하수도를
 “공공하수도”로 하고
 - 「오수·분뇨법」상 개인의무에 해당하는 시설을 “개인하수도”로
 구분함
- 「오수·분뇨법」과 「하수도법」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개선 및 새로운 정책추진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국가하수도종합계획수립 등 하수도계획 및 인가체계 정비
 - 하수처리수의 재이용 확대를 위한 제도 마련
 -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책무강화
 - 정화조 청소업을 분뇨 수집·운반업으로 통합하는 등 분뇨관련
 업종의 통·폐합
 -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면제 확대기반 마련,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규정 개정 등 국민의 부담 및 규제완화
- 그외 「수도법」에 규정된 “중수도”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동 조항을 「하수도법」에 옮겨 규정
 - 하수처리수의 재이용관련 규정과 연계시키기 위함

1. 하수·오수관련 용어의 통합 정리 (법 제2조)

- “하수” 를 오염물질제거의 대상인 「오수」 와 배제의 대상인 「빗물·지하수」 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함
- “하수도” 의 범위에 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함
- “공공하수도” 에 상대되는 개념의 “개인하수도” 라는 용어를 신설함
 - 「하수종말처리시설」 을 「공공하수처리시설」 로 변경하고, 별도 구분의 실익이 없는 “마을하수도” 규정삭제
 - 개인하수처리시설, 배수설비 및 중수도 등 개인의 책무로 설치·관리하는 모든 시설을 개인하수도로 함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이 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下水(가정하수+빗물) ○ 汚水(가정하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수” 용어로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수와 빗물·지하수를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수도법과 오수분뇨법 통합으로 용어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하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하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하수도” 용어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이 설치하는 하수도(오수처리시설, 중수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주체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상대되는 개념의 개인하수도 용어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수종말처리시설 ○ 마을하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하수처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하수도용어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두 지자체장이 설치·관리하는 시설로 구분의 실익이 적어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정화조(처리구역內) ○ 오수처리시설(처리구역外)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하수처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수처리시설 - 정화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정리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구분하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시설의 명칭은 유지

2. 계획수립체계의 확대·정비 (법 제4조·제6조)

- “국가하수도종합계획” 수립근거 신설(법 제4조)
 - 환경부장관이 국가하수도정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10년마다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함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관련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대상 확대·강화(법 제6조)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분뇨처리계획 포함
 - 도시기본계획, 댐건설 등으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함.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승인 대상(규칙 제2조)
 - 변경승인 제외대상 열거 방식에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개선
 - * 하수처리구역 포함 여부에 따라 행위제한이 달라지는 특별대책지역·수변구역 등과 기타지역으로 구분하여 변경승인 대상범위를 차등규정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승인대상>

현 행	개 정 안
<변경승인 제외대상>	<변경승인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수시설용량 20%미만 증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하수처리시설 위치변경, 신·증설, 계획 처리구역 변경 ○ 기타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처리용량 20%이상 증설, 계획 처리구역 면적 10%이상 확대

3. 방류수 수질기준 (법 제7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규칙 제3조)

-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하수처리구역 여부 및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구분하여 조정

<하수처리구역 안>

-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 적용 폐지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오수처리시설	<input type="radio"/> 없음 <input type="radio"/> 준공검사 기준 - BOD 제거율 50%이상	<input type="radio"/> 현행과 같음 <input type="radio"/> 폐지
정화조		

<하수처리구역밖>

- 오수처리시설 : 50m³/일 이상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기준 적용
- 정화조 : 10인용이하 방류수수질기준 적용 제외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오수처리시설	<input type="radio"/> 모든 시설 동일 : BOD, SS 20mg/ℓ 이하	<input type="radio"/> 50톤 미만 : 현행과 같음 <input type="radio"/> 50톤 이상 :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기준 - BOD 10, COD 40, SS 10, T-N 20, T-P 2mg/ℓ 이하, 대장균군수 3,000개이하 ※ 기존건물은 2012.1.1부터 적용
정화조	<input type="radio"/> 모든 시설 - BOD 제거율 50%이상	<input type="radio"/> 11인용 이상 : BOD 제거율 50%이상 ※ 10인용이하 : 기준 폐지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지역 확대(영 제4조)

- 특·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수질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함

현 행	개 정
-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등 8개지역·구역	- 해양보호구역, 환경보전해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3개추가

4. 공공하수도의 설치·관리 (법 제15조·제19조·제20조)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규칙 제8조)

- 하수처리구역을 공공하수관거로부터 300m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하도록 함.

구 분	현 행	개 정 안
하수처리구역 지정 기준	○ 별도 규정없음	○ 규정신설 - 하수관거로부터 직선거리로 300m이내 ※ 조례로 지정기준을 정할 수 있음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예외(규칙 제10조)

-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할 수 있는 경우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위법여부에 대한 논란방지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설치·관리기준 준수예외	○ 별도 규정 없음	○ 예외규정 마련 - 강우·재해·사고 등에 대비하여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및 배출 - 처리공법상 불가피한 회석처리(분뇨) - 시설개량으로 불가피한 경우(지방(유역)환경청과 사전협의)

공공하수도 기술진단(법 제20조, 규칙 제14조 · 74조)

- 5년마다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토록 하고, 기술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대행기관을 규정함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주 기	- 5년마다 기술진단 (시행령)	- 5년마다 기술진단(법률) - 필요시 정밀진단 실시 - 50m ³ /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 분뇨처리시설 -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필요하다고 판단 하는 하수도시설 - 대상시설의 공정별 처리효율 검토 - 대상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기타 필요한 사항
대 상		
내 용		
대행기관	- 환경관리공단(환경부훈령)	- 기술진단 : 환경관리공단 - 정밀진단 : 환경관리공단, 엔지니어링 활 동주체, 기술사사무소

5. 하수의 재이용 확대기반 마련(제21조, 제26조)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수의 재이용 확대기반 마련

-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며, 처리수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비용을 받을 수 있음(법 제21조)
-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 및 재이용하여야 하는 수량을 규정함(영 제17조)

구 分	현 행	개 정 안
재이용 의무대상	<신설>	- 5천 m ³ /일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신규)
재이용 수량	<신설>	- 하수처리수량의 5% 이상

「수도법」의 중수도 관련 사항을 「하수도법」으로 이관하여 규정(법 제26조)

- 하수의 재이용과 관련된 시설이므로 「하수도법」에 관리규정을 두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수처리수의 재이용 및 공급 근거 마련 ○ 재이용수 공급시 비용을 받을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려지는 처리수의 재이용을 확대하여 보조 수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함
○ 중수도 설치의무 -수도법(제11조)에 규정	- 하수도법에 규정	○ 중수도시설을 하수도의 일부로 관리하려는 것임

6. 개인하수도시설의 설치·관리(법 제27조·제34조·제35조·제37조·제40조)

배수설비 설치의무 예외(규칙 제24조)

- 임시건물(모델하우스, 현장사무실 등)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운반·처리하는 경우에 배수설비 설치 면제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배수설비설치 의무면제대상	<신설>	- 임시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분뇨 수집·운반업자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운반·처리하는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증설(영 제24조·제25조)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영 제24조)

현 행	현 행	개 정 안
하수처리구역 안	- 정화조	- 현행과 같음
하수처리구역 밖	- 오수처리시설	- 오수발생량 2m ³ /일 이하 : 정화조 - 오수발생량 2m ³ /일 초과 : 오수처리시설

○ 기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신·증설(영 제25조)

<하수처리구역 안>

- 오수량 증가에 따른 정화조 용량증대 면제대상을 정화조 용량의 1.2배에서 2배 이내로 확대함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정화조 증설 의무 면제대상	- 오수량(증가량 포함)이 정화조 용 량의 1.2배이내	- 오수량(증가량 포함)이 정화조용량 의 2배 이내

<하수처리구역 밖>

- 정화조가 설치된 기존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오수량이 1일 2m³/일 이상 증가하는 경우 오수처리시설 설치(오수처리 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

※ 기존 정화조 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라도 1일 2m³/일 이상 오수발생량이 증가하는 경우 오수처리시설로 전환하여야 함

구 分	현 행	개 정 안
정화조 증설 의무 면제대상	- 오수량(증가량 포함)이 정화조 용량의 1.2배이내	- 오수량(증가량 포함)이 정화조 용량의 2배 이내
개인하수 처리시설 설치	- 오수처리시설	- 오수발생량 2m ³ /일 이하 : 정화조 - 오수발생량 2m ³ /일 초과 : 오수처리시설

○ 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로 전환해야하는 대상

- 정화조가 설치된 기존 건물의 증축 등으로 오수량이 증가하는 경우 오수처리시설 설치의무대상을 건축 연면적기준에서 오수발생량 기준으로 개정

<정화조가 설치된 기존건축물의 오수처리시설 설치대상>

현 행	개 정 안
- 건축연면적 1,600㎡ 이상	- 오수증가량 2m³/일 초과
- 50%증축, 연면적 200㎡ 이상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 등(법제37조)

- 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후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 시공자에게 하던 개선명령을 시설의 소유자에게 하도록 함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 건축주가 직접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가능	○ 설계 · 시공업자만 가능	○ 부실시공 사전예방
○ 준공검사후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시 시공자에게 개선 명령	○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에게 개선명령	○ 소유자의 도급을 받은 시 공자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것은 법률 체계 상 맞지 않음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 · 관리(법제 39조)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개선(영 제 26조, 규칙 제33조)
- 공공하수처리시설로의 유입여부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 고용의무 및 자가측정 대상 조정

구 분	현 행	개 정 안
<하수처리구역 안> - 기술관리인 고용의무	-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2천인이상	폐지
<하수처리구역 밖> - 기술관리인 고용의무 및 자가측정의무 대상	- 오수처리시설 : 200m³/일 이상 - 정화조 : 처리대상인원 2천인이상	- 오수처리시설 : 50m³/일 이상 - 정화조 : 1천인 이상

7. 하수·분뇨관련 영업(제45조 내지 제53조)

“정화조청소업” 을 “분뇨수집·운반업” 으로 통합(법 제 45 조)

- “정화조청소업” 과 “분뇨수집·운반업” 은 그간 법적으로 별개의 업종이었으나 실제로는 허가기준과 사업범위가 동일하므로 “분뇨수집·운반업” 으로 통합

분뇨처리업 폐지

- 민간업체 참여가 사실상 곤란하여 그 동안 등록업체가 전혀 없는 분뇨처리업 제도를 폐지

현 행	개 정 안	개 선 이 유
<input type="radio"/> 정화조청소업 <input type="radio"/> 분뇨수집·운반업	<input type="radio"/> 분뇨수집·운반업	<input type="radio"/> 허가기준 및 영업대상유사
<input type="radio"/> 분뇨처리업	<폐지>	<input type="radio"/> 민간업체 참여 곤란 으로 실효성 없음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법 제53 조)

-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은 개인의 의무를 위탁받아 하수처리 시설을 관리하는 업종으로 영업구역 등 허가조건이 불필요하므로 등록제로 전환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input type="radio"/>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허가제	<input type="radio"/>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등록제	<input type="radio"/> 허가조건 등의 부여가 불필 요하므로 허가제 유지 필요 성 없음

8. 개인부담 및 규제완화 등(법 제34조, 제61조)

□ 정화조 설치의무 면제지역 확대(법제 34조, 규칙 제25조)

- 하수처리구역내 합류식관거 지역도 일정기준이상으로 하수관거를 정비하여 「하수관거정비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정화조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하수관거정비구역」 지정기준 : 하수관거가 밀폐형 구조이고, 월류수 수질을 $BOD40\text{mg/L}$ 이하로 관리할 수 있는 지역

현 행	개 정 안
○ 합류식지역 : 정화조 설치	○ 합류식지역내 「하수관거정비 구역」 : 정화조설치 면제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제도 개선(법제61조)

- 손괴자 부담금제도 폐지
 - 그동안 집행실적이 없고, 동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별칙 규정에 의한 처벌이나 원인자부담금 규정 등에 의한 원상복구가 가능하므로 폐지
- 건축물의 신·증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대상 완화(영 제35조)
 - 하수처리구역내에서 건축물의 신·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하수발생량 증가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을 1일 오수발생량 1m^3 에서 10m^3 이상으로 완화함
 - ※ 이미 부과된 원인자 부담금중 오수발생량 10m^3 미만으로 납부기한이 법 시행일 이후인 것은 납부하지 않음(법 부칙 제8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제도>

현 행	개 정 안
① 일정량 이상의 하수 배제로 하수도의 개축이 필요하게 된 때 부과	○ 현 행 ①과 ④를 통합하여 하수발생량 10m ³ /일 이상 부과
②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가 필요하게 된 때 부과	○ 현행유지
③ 공공하수도를 손괴 시킬 행위를 한 때 부과	<삭 제>
④ 단독정화조 등의 면제비용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 - 오수발생량 10m ³ /일 이상	<삭 제>

9. 권한위임 등(법 제74조·제80조)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권한 위임(법 제74조, 영 제41조)

-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한 환경부 장관의 승인 권한을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함

<하수도정비기본계획승인 권한>

계획수립권자	승인권자	
	현 행	개 정
특·광역시장, 도지사		환경부장관
시장·군수	환경부장관	유역(지방)환경청장

□ 공공하수도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위반시 과태료부과(법 제80조)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 시설에 대해서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개인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과 형평성 및 관리책임을 강화하기 위함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시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책무 강화 ○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과태료와 형평성 유지

<별첨 4>

환경부 시달 하수도조례 표준안

하수도조례 기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군)(이하 "시(군)"이라 한다)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법 제15조 및 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0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3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법 제18조 및 규칙 제9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장·광역시장과 구청장의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특별시장·광역시장 : 분뇨처리시설 및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하는 하수관거와 공작물·시설물 등의 공공하수도
2. 구청장 : 특별시장·광역시장이 관리하는 범위 이외의 공공하수도

제4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①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3조제1호에 규정한 공공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②구청장은 제3조제2호에 규정한 공공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청장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5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

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기타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수도급수조례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개시신고
 2.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지하수법」 제7조·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제6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8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①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구비하여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시설을 확인하여 중수도로 인정되는 시설분에 대해서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시설의 확장계획
2. 중수도 시설의 운전중지
3. 사업자 또는 관리자 변경

④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 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사항 및 중수도 시설사항 등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0조(중수도의 관리)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중수도의 관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저수조는 수량 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에 의한 보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수가 수돗물과 혼합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2. 송·배수시설은 수도, 전기, 기타 배관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할 것

3. 이용설비에 “중수도 사용”이라는 표지를 할 것
4. 중수도의 운전기록 및 수질검사 등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기록·보관 할 것

제11조(중수도의 용도제한) 중수도의 용도는 수세식변소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 세차·청소용수 등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중수도의 수질검사) ①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질검사의 횟수는 PH, 냄새, 색도, 탁도, 외관 및 잔류염소(결합)에 대하여는 매주 1회 이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대장균군수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이상으로 한다.
 ③ 채수장소는 중수도를 사용하는 장소로 한다.

제13조(시장·군수·구청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⑤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거쳐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5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 제16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

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② 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별표 1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 한다.

③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별표 1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시·군·자치구의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8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공공하수도관리청의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의 경우에는 제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5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9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한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환경보전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20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1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m³/일 이상인 경우 전체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m³/일 이상인 경우 10m³/일을 초과하는 양

*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 : 별표 4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m³/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m³/일)에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 (원/m³/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4.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②제23조의 태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태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2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3조(태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태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태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당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m³/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태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시·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태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시 태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21조제1항 제3호에 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태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④원인자부담금은 태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고 준공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5조(감면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

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3.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5.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26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73조 및 제75조 내지 제7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 (가산금 및 독촉)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군수·구청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불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28조(권한의 위임)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의 권한을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수도사업소장, 읍장 또는 면장 등에게 위임한다.

1.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등의 접수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신고의 접수
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사용신고의 접수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5.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 설치신고의 접수 및 확인
6.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공사의 시행
7.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준공검사

8. 제16조 ·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징수
9.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산정
10.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조사
11.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점용료의 징수
12. 제21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13.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징수
14.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
15.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
16.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제29조(조례시행규칙에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7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6조제2항)

1.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 하수도 사용업종은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업종에 준한다.
-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기타 용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구분 업종	기본요금 (원)	사 용 요 을			
		사용구분 (m ³ /월)	m ³ 당 단가 (원)		
			분류식 지역	합류식 지역	하수관거 사용지역
일반용					
영업용					
욕탕용					
산업용					

주 1.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 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함

2. 기본요금은 기본적 행정경비 등을 고려하여 적용함

3. m³당 단가 구분

가. 분류식 지역 : 오수·우수관거가 분리된 지역으로 발생오수가 오수관거를 통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되는 지역(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지역)

나. 합류식 지역 : 합류관거를 통하여 발생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되는 지역

다. 하수관거 사용지역 : 공공하수도 사용개시공고 지역 중 발생하수가 공공하수처리 시설에 유입 처리되지 않는 지역

[별표 2]

수질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제16조제3항) 대상항목 : BOD 또는 COD, SS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하수도사용료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배출허용기준 농도와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농도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다(시행령안 제29조 제1호)
- BOD 또는 COD 값 중 큰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SS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폐수배출량은 「수질환경보전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측정기기에 의거 산정한다.

 수질하수도사용료

- 수질하수도사용료(원) = 오염부하량[수질초과농도(mg/L)×시간당 폐수 배출량(m³/시간)] × $\frac{1}{1000}$ (kg/g) × 1일조업시간(시간/일) × 30일 × kg단가(원/kg)

*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배출시설의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조업 시간 평균치를 적용한다.

[별표 3]

공공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_(제20조제1항)

(365일 기준)

구 분	산 정 기 준
1. 도로, 철도, 궤도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6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3. 택지 또는 상가로 하는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4. 기타 사유로 인한 공공하수도의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8

주 1. 구분 및 산정기준은 시 또는 군별로 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 등을 고려하여 특성에 맞게 조정할 것.

< 계산 예 >

1.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이 100만원이고, 점용기간이 183일인 경우의 점용면적당 공공하수도 점용료는?
- $$= 100(\text{만원}) \times (6/100) \times (183/365) = 3(\text{만원})$$

[별표 4]

건축물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량 산정 예(제21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

(오수량 : m³/일)

구 분	최초 행정 행위시 오수발생량(A)	1차 증축·용도변경				2차 증축·용도변경			
		증가량(B)	총오수량(C) (A+B)	부과량(D)	적용방법	증가량(E)	총오수량(F) (C+E)	부과량(G)	적용방법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0 <small>*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볼</small>	3 <small>※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볼</small>	3	-	(B)<10 미부과	1	4	-	(B)+(E)<10 미부과
						6	9	-	(E)>10 전체부과
						12	15	12	(B)+(E)<10 미부과
		7 <small>※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볼</small>	7	-	(B)<10 미부과	2	9	-	(B)+(E)>10 초과량부과
						7	14	4	(E)>10 전체부과
	5 (미부과)	11 <small>※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볼</small>	11	11	(B)>10 전체부과	11	18	11	(E)>10 전체부과
						4	15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볼
						7	18	-	(B)+(E)>10 초과량부과
						11	22	11	(E)>10 전체부과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 <small>*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신축 불 오수발생량은 0으로 볼</small>	3 <small>※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신축 불 오수발생량은 0으로 볼</small>	8	(A)+(B)<10 미부과	1	9	-	(A)+(B)+(E)<10 미부과
						7	15	5	(A)+(B)+(E)>10 초과량부과
						12	20	12	(E)>10 전체부과
			7 <small>※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신축 불 오수발생량은 0으로 볼</small>	12	(A)+(B)>10 초과량부과	1	13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신축불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볼
						6	18	-	(B)>10 전체부과
			11 <small>※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신축 불 오수발생량은 0으로 볼</small>	16	(B)>10 전체부과	12	24	12	(E)>10 전체부과
						1	17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신축불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볼
						6	22	-	(B)>10 전체부과
						12	28	12	(E)>10 전체부과
			10 (부과)	3 <small>※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신축 불 오수발생량은 0으로 볼</small>	(B)<10 미부과	3	16	-	기준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6	19	-	(B)<10 미부과
						12	25	12	(B)>10 전체부과
		7 <small>※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신축 불 오수발생량은 0으로 볼</small>	17	-	(B)<10 미부과	2	19	-	(B)>10 전체부과
						6	23	3	(B)>10 전체부과
		11 <small>※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신축 불 오수발생량은 0으로 볼</small>	21	11	(B)>10 전체부과	12	29	12	(B)>10 전체부과
						2	23	-	(B)>10 전체부과
						6	27	-	(B)>10 전체부과
						12	33	12	(B)>10 전체부과

- 주) 1. 신축 또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발생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 미부과
 2. 수회에 걸쳐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초과량부과
 3. 각각의 신축증축·용도변경 행위로 오수발생(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오수발생(증가)량 전체부과

[별표 5]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산정방식(제21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

○ m'당 원인자부담금

$$= \frac{\text{공공하수처리시설 총사업비(원)}}{\text{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m}^3\text{/일)}} \times a$$

▷ a =

$$\left(1 + \frac{\text{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 연평균 생산자물가 상승률}}{100} \right)^n$$

▷ n :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의 경과연수

- *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한 차집관거(간선관거)를 포함한다.] 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 * 시·군 내 2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시·군 내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별표 6]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제24조제1항)

1. 수거식화장실

부과기준	수수료		
	수집·운반	처리	계
10리터	원	원	원

2.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구 분	수수료		
	수집·운반	처리	계
기본요금 (000리터까지)	원	원	원
초과요금 (100리터마다)	원	원	원

* “수집·운반”은 분뇨의 수집·운반(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경우 청소 포함)수수료를 말함

* “처리”는 분뇨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의 유입 처리 수수료를 말함

[별표 7]

중수도·하수처리수 재이용수 사용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제25조제2항)

업종	구분		감면비율(%)
	중수도	재이용수	
일반용	00	00	
영업용	"	"	
욕탕용	"	"	
산업용	"	"	

주) 감면비율은 공공하수도사용료를 기준으로 감면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함

<계산 예>

1. 공공하수도사용료가 100원이고 감면비율이 20%인 경우 최종 공공하수도사용료는 ?
 = 공공하수도 사용료(100원) - 감면액($100\text{원} \times 20\% = 20\text{원}$) = 80원 (최종 공공하수도사용료)

[별지]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제14조제1항)							
설치자	법인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시공자	법인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배수설비현황	설치목적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배제					
	설치위치	시·군·구	읍·면·동	번지(통반)			
	관종	PVC관, PE관, 흙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관경	Ø mm	연장	m	접속방법	(하수관, 맨홀, 타배수설비, 기타)에 접속	
	배출수량	m ³ /일		※ 제18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준공검사	검사항목			1차 검사	보완사항	2차 검사	비고
				검사일자 ()			
	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 지하수침투여부, 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						
	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						
	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						
	5. 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						
	6. 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						
	7. 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						
검사자			성명(서명 또는 인)	성명(서명 또는 인)			
※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수수료	

〈별 첨 5〉

기 타 참 고 사 항

1. 「양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현행조례(전문)
2. 「양주시중수도운영조례」 (폐지대상)
3. 「양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폐지대상)

1. 「양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현행조례(전문)

양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정 2003. 10. 19 조례 제101호
 개정 2004. 12. 6 조례 제180호
 개정 2006. 5. 29 조례 제25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의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제하는 자,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자·관리자 등을 말한다.
2. “배수설비”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관, 배수거, 기타의 배수시설(이하 “배수설비”라 한다)을 말한다.
3. “배수설비설치자”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된 공공하수도의 배수구역내에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를 말한다.
4. “점용자”라 함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5. “차집관거”라 함은 청천시의 하수나 우천시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배제하기 위한 관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 이설·개조·수선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어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할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

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배수설비의 시공) ① 배수설비의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이하 “조례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 할 수 있다.

제5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하수도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자의 신고사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배수설비의 관리) ①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의 개축, 수선 및 유지관리는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② 배수설비설치자는 배수설비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누수, 주위의 오염발생 또는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법 제18조 및 규칙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하수종말처리시설, 차집관거상의 중계펌프장, 차집관거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와 차집관거의 준설
2. 공공하수도 배수구역내 하수관거 및 중계펌프장·빗물펌프장 등 기타 공작물의 설치·개축·확장·수선 및 유지관리

제8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시장의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따른 비용부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비
2. 차집관거의 중계펌프장, 차집관거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비
3. 간선하수관거(합류식 관거 및 우수관거 : 안지름 900mm 또는 통수단면적 0.7m²)

이상), 오수관(안지름 500mm 이상)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비 및 차집관거의 준설비

4. 하수중계펌프장·빗물펌프장의 설치·개축 및 확장사업비
5. 제3호의 간선관거이하 하수관거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비
6. 하수중계펌프장·빗물펌프장의 수선 및 유지관리비
7. 간이펌프장(무인수중펌프)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비
8. 기타 하수도 시설물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비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하수도정비 시책사업 및 기타비용

제9조(사용개시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 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기타 배출되는 하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구분과 달라졌을 때

②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및 양주시수도급수조례(이하 “급수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개시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10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하수관거준설 등) 시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하기 위하여 매년 1회이상 하수관거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2년에 1회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준설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 준설을 할 수 있다.

제12조(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 등) ① 점용자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점용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공공하수도를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사용료) ① 시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기 위

해서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미설치된 경우에는 하수관거 유지·관리비만을 사용료로 정수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 사용자로부터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요율과 별표 1-1에 의한 업종에 의하여 정수하여야 한다. 다만, 우수 또는 해안에 직접 방류하는 순수한 냉각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 5 비고]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 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의한 하수도 사용료외에 별표 2에 의한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정수할 수 있다.

제14조(하수배출량의 인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전용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②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공공하수도 관리청의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1.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2.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의 경우에는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양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③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5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1일 100톤 이상의 하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 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게 하여야 하며, 계측장치 설치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계측장치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량측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 계측장치 설치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

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수도급수사용료 납부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시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한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7조(점용료) ① 시장은 하수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점용 허가를 할 때에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그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일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하고, 1월미만일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③ 점용료는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각 연도분을 그 연도의 1월중에 징수하되, 허가시에는 그 연도분을 선납하게 한다.

④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⑤ 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하수관거 및 펌프시설, 하수처리시설)의 신·증설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환경평가비, 용지비(지장물보상비 포함), 공사비(부대공사비포함), 시공감리비, 기타 부대비로 한다. 다만, 하수관거는 개발지역에서 하수처리시설까지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설치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4와 같이 산정한다.

1. 시장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인·허가 사항이 법 제32조제4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당해 배수설비가 공공하수도에서 접속되는 곳에서의 공공하수도 계획수량의 10분의 1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 (하수관거, 하수처리설, 펌프장)의 개축이 필요하게 될 때에는 그 비용의 3분의 2이상을 배수설비설치자

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 가.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신고량
 - 나.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량
 -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설치시 승인된 량
2.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를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 행위자가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 가. 타공사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 : 타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1)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등 설치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이설·보수·개수 등이 필요한 경우
 - 나. 타행위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 : 공공하수도 이외의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1) 도시의 개발사업(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등)
 - (2) 산업입지및단지조성사업(국가산업단지조성, 지방산업단지조성, 농공단지조성, 공장부지조성 등)
 - (3) 공항의 건설사업
 - (4) 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 온천단지, 공원집단시설 지구등)
 - (5) 기타 법 제5조의2 규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상 하수처리 구역으로 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지역중 타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시키도록 요청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증설이 필요한 경우
3. 시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손괴시킬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그 행위자가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 가.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등의 매설 및 이설공사시 공공하수도를 파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
4. 시장은 법 제32조제4항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하수처리 구역안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다만,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제2항제1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거비용을 추가로 산정·합산하여 부담시켜야 함

가. 오수를 하수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나. 수세식변소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우·오수 분류식 하수도를 통하여 하수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③시장은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매년 2월말까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당해시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 산정방법(당해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 보고서상의 수량,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 별표 3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 별표 5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2. 별표 4의 산정방식에 따른 세제곱미터당 원인자부담금 부과액

④원인자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당해사업 또는 시설물의 완공전에 징수하며 그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은 시장이 이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가산금) ①시장은 공공하수도의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끼리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시장은 점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납부금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증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0조(감면) 시장은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점용료·기타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21조(부과액 조정신청) ①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장은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지방세법의 준용)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기타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의 예에 따른다.

제23조(사용의 제한) ①시장은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늦어도 3일전에 그 구역 및 기간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의 권한을 상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1. 제13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징수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
3.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조사
4.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징수
5.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
6.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점용료의 부과액 조정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

제25조(조례시행규칙에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양주군하수도사용조례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배수설비 등과 청분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4. 12. 6)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하여 익월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후 익월전까지 부과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에 적용되는 요율 및 업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6. 5. 29 조례 제2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04. 12. 6, 2006. 5. 29>

하수도 사용 요율표(제13조제2항 관련)

업 종	구 分	사 용 요 율	
		기본요금(원)	m'당 단가(원)
가 정 용		1 - 10	210
		11 - 20	220
		21 - 30	290
		31 이상	400
일 반 용		1 - 100	310
		101 - 300	390
		301 - 1,000	460
		1,001 - 2,000	550
		2,001 이상	640
대중탕용		1 - 1,000	300
		1,001 - 1,500	360
		1,501 - 2,000	420
		2,001 이상	480
산 업 용		0 - 1000	300
		1001 이상	340

- 주 1.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 사용요율이 높은 업종의 사용요율을 적용함.
2. 기본요금은 기본적 행정경비 등을 고려하여 적용함.

[별표 1-1]

하수도 사용업종별 구분표(제13조제2항 관련)

업 종	구 분 내 용
가정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 또는 공동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 · 담배·연탄·양곡·문방구·지물·철물의 소매점, 부동산중개업, 인장업 · 행정사업, 수예점, 만화가게 등 10제곱미터미만의 소규모 판매시설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시설 및 국가유공단체
일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급수시설
대중탕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대중 목욕장업
산업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 등록된 사업장

[별표 2]

수질 하수도 사용료(제13조제3항 관련)

대상항목 : BOD 또는 COD, SS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하수도 사용료는 하수처리시설의 설계기준 농도에서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농도를 뺀 값으로 산정한다(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 BOD 또는 COD 값중 큰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SS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폐수배출량은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유량계 및 각종계량기에 의거 산정한다.

수질하수도 사용료

수질하수도 사용료=오염부하량 [수질초과농도(mg/l)×시간당 폐수 배출량(m³)]

$$\times \frac{1}{1000} \times \text{kg 단가} \times 1\text{일 조업시간} \times 30\text{일}$$

※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배출시설의 조업시간 평균치로서 분으로 표시

[별표 3]

하수도점용료 산정기준(제17조제1항 관련)

구 분	산 정 기 준
1. 도로, 철도, 궤도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
2. 영리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
3. 택지 또는 상가로 하는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
4. 기타 사유로 인한 공공하수도의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8

[별표 4]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제18조제2항 관련)

원인자 부담금 = 하수종말 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 + 하수관거 원인자 부담금

$$\text{○ 하수종말 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 = \frac{\text{개발지역내 하수발생량(m}^3/\text{일)}}{\text{하수종말 처리시설 용량(m}^3/\text{일})} \times a$$

* 총 사업비는 조례 제17조제1항에 의하여 산정한 비용으로 지방양여금, 지방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

$$\text{○ 하수관거 원인자 부담금} = \frac{\text{개발지역내 하수발생량(m}^3/\text{일)}}{\text{하수관거의 계획하수량(m}^3/\text{일})} \times a$$

* 총 사업비는 조례 제17조제1항에 의하여 산정한 비용으로 지방양여금, 지방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

$$a : [1 + \frac{\text{공공하수도 설치완공이후 연평균 도매물가 상승율}}{100}] n$$

n : 공공하수도 설치완료 이후 경과년수

2. 「양주시중수도운영조례」 현행조례(폐지 대상)

양주시중수도운영조례

제정 2003.10.19 조례 제13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1조 및 수도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수도의 설치·관리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돗물"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공급하는 원수 또는 정수를 말한다.
2. "중수도"라 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처리시설, 송·배수시설 및 이용설비의 전부를 말한다.
3. "중수"라 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한 물을 말한다.
4. "중수처리시설"이라 함은 용도별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얻기 위해 필요한 처리시설의 전부를 말한다.
5. "송·배수시설"이라 함은 중수를 중수처리시설로부터 이용설비까지 송·배수하는데 필요한 시설의 전부를 말한다.
6. "이용설비"라 함은 저수조, 수세식변기, 살수전 등 중수가 사용되는 설비의 전부를 말한다.

제3조(설치대상) ① 수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중수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당해 지역의 물 공급사정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중수도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4조(중수도시공업자의 자격) 중수도시공업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2의 면허기준중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상·하수설비공사업의 면허소지자
2.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자
3.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등의 설계·시공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등록한 자

제5조(설치통보 및 확인)

① 시장은 수도법 제11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중수도설

치결과를 통보 받은 때에는 수도법 제11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중수도설치확인서를 교부 할 수 있다.

②중수도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1. 중수도시설의 확장계획
2. 중수도시설의 운영중지
3. 소유자 및 관리자 변경

제6조(관리)

①중수도의 관리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그가 임명하는 자가 한다.

②중수도를 설치한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중수도의 관리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저수조는 수량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에 의한 보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수가 수돗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2. 송·배수시설은 수도, 전기, 기타 배관과 구별될 것
3. 이용설비에는 반드시 "중수도사용"이란 표식을 설치하여 오용을 방지할 것
4. 중수도의 운영기록 등의 관련서류를 기록·보관할 것

③중수도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상해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7조(용도) 중수도는 수세식변소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 청소용수, 공업용수등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수질기준) 중수도를 설치한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중수의 수질이 수도법시행규칙 제3조 별표1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용도 기준이 없는 경우 중수도를 설치한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정하여 제출한 수질기준에 의한다.

제9조(수질검사)

①중수도를 설치한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수질검사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1.잔류염소, 외관, 탁도, 색도, 냄새, 수소이온농도(pH): 매분기 1회이상 실시
- 2.대장균군,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및 화학적산소요구량(COD) : 매년 1회이상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 실시

②수질검사에 따른 채수장소는 사용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저수조의 출구로 한다.

제10조(요금감면)

①시장은 중수도를 설치하여 운영중인 소유자에 대하여 중수도사용량에 해당하는 당해 업종의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중수도사용량에 해당하는 업종별수도요금을 감면 할

수 있다.

1. 가정용에 대해서는 중수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60퍼센트
2.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에 대해서는 중수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50퍼센트
- ③수도요금 감면기간은 중수도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연도를 포함하여 1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④중수도 사용량은 월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며 사용량은 중수도계량기에 의해 측정된 수량을 적용한다.
- ⑤시장은 매월 정기적으로 중수도계량기에 기록된 사용수량을 검침하고 이에 근거한 요금감면액을 산정하여 수도요금고지서 발급시 감면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요금감면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주시수도급수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1조(검침) 시장은 매월 또는 격월 정례기간중에 중수도계량기에 기록된 사용수량을 검침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검침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계량기의 설치)

- ①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중수도사용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고장으로 인하여 보수할 때에는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②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중수도계량기가 파손되거나 고장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수량 인정)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중수도사용수량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1. 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한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계량기의 조작 또는 고의로 손상시키는 경우 해당기간중 중수도 사용수량
4.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능한 경우

제14조(과태료) 시장은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를 면한 자 및 부정시설물을 설치한 자에 대하여는 양주시수도급수조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징수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양주군중수도운영조례에 의한 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등에 관한 사항과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3. 「양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현행조례(폐지대상)

양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정 2003.10.19 조례 제83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뇨 등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①시장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할구역안의 분뇨 및 축산폐수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2이상의 시·군에서 발생되는 분뇨 및 축산폐수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시설비·운영비등은 해당 시·군의 분뇨 또는 축산폐수의 반입량을 고려하여 협의·결정한다.

제3조(기본계획수립) 시장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분뇨 및 축산폐수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분뇨수집의무지역 및 제외지역 선정)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구역 전지역을 분뇨수집 의무지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오지·벽지 등 분뇨수집·운반·처리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수집의무제외지역(다수인이 모이는 국립공원 등 관광지로서 특히 청결의 유지를 필요로 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장 오수 및 분뇨처리

제5조(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및 수수료 징수 등)

①시장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분뇨를 수집·운반·처리함에 있어

지역별 일정 등을 정하여 분뇨를 적정하게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②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를 함께 있어서 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1. 분뇨 : 분뇨수집수수료는 별표1에 의하여 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되는 양에 따라 징수(다만, 시장이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2. 정화조 오니 :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청소수수료는 별표2에 의하여 청소된 오니(오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양에 따라 징수(이 경우 정화조 청소업자가 청소하는 때에는 청소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분뇨위생처리장 처리비 : 분뇨위생처리장(하수처리장을 포함한다. 이하 "처리장"이라 한다)에서 수집된 분뇨 및 오니를 위생처리하는 경우에는 처리장 처리비를 수집운반시 배출자로부터 18리터당 25원씩 분뇨수집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이 경우 배출자별로 계산한 금액에 10원미만이 있을 때에는 원단위는 절사한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분뇨를 배출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를 새로이 취득하거나 승계한 자는 수수료의 납부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⑤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때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⑥시장이 정한 수거대상지역 이외에 청소의무자의 청소요구가 있어 분뇨를 수거한 때에는 그 경비를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제6조(분뇨위생처리장 사용료 징수방법 등)

①처리장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분뇨를 위생처리 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이용하는 경우 100리터당 100원을 징수한다.

1. 분뇨수집·운반허가를 받은 자
2. 정화조청소업허가를 받은 자
3. 기타 시장이 처리장을 이용하도록 인정하는 자

②처리장 사용료는 분뇨수집·운반대행업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자로부터 분뇨수거시 징수한 처리장 처리비를 자체청소의무자는 제1항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적용을 받는 자는 처리장에 분뇨 및 오니의 물량을 반입할 때마다 물량반

입신고서를 제출하고 사용료는 다음날까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처리장에 수거한 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처리장 사용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징수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중에서 전년도 수거반입 물량에 대한 처리비의 12분의 3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시장에게 예치한 경우에는 사용료 납부를 다음달 15일까지 유예하여 월 1회씩 납부

2. 처리장사용료는 전표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처리장사용전표를 처리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전 판매하고 처리장을 사용하는 자는 분뇨투입시 처리장의 관리인에게 전표를 제출한 후 투입하여야 하며, 처리장에서는 회수된 전표를 소인한 후 매일 정리하여 기록을 유지하고 집계하여 당월 접수한 전표와 반입된 물량을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처리장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장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7조(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교부) 시장은 분뇨수집·운반업자 또는 정화조청소업자가 분뇨처리장 사용료를 납부한 때에는 분기말 다음달 20일까지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8조(분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조의 청소대행)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를 함에 있어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 등 관련영업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 또는 청소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대행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
2. 대행기간
3.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4. 수집·운반차량의 용량별, 형식별 대수(흡입식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 등 필요한 장비의 구비 등)
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 및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축산폐수의 처리

제9조(축산시설의 관리) 시장은 관할구역안의 축산시설에 대하여 연 1회이상 사육종별, 사육시설규모 및 축산폐수처리 등의 실태조사로 자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축산시설의 배출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가축사육의 제한

제10조(가축사육의 제한지역) 시장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일정지역을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제한지역)

- ①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안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 2. 수의사·가축인공수정사가 학습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도매시장·도축장 및 부화장내에 부설한 계류장
 - 4. 농경영 및 농가의 부업으로 사육하는 1마리의 소·말·돼지 및 5수이하의 가금류
- ② 가축사육제한 지역은 별표3과 같다.

제12조(가축사육의 허가절차 등)

- ① 제한지역에서 가축사육의 허가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육지 위치도
2. 사업계획서

- ②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사육장의 상태, 주민의 보건위생 및 주거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정밀조사 필요시에는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③ 가축사육허가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고, 그 허가증을 교부받은 자는 이를 축사내 잘보이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④ 가축사육허가를 받은 자는 그 축사를 항상 청결히 유지 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 등으로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3조(가축사육허가에 대한 지도 감독)

① 가축사육허가를 받은 자가 제12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시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사육지 주변의 여건이 현저하게 변화되어 가축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주민의 보건 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은 사육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사육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는 이전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당한 유예기간을 주어야 한다.

제14조(축사이전조치 등) 시장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환경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전을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전에 필요한 6월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이전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부지알선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제한지역외의 지역)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때에는 악취와 유해해충의 발생과 수질오염이 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시설과 위생적인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5장 분뇨관련 영업허가 등

제16조(분뇨관련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분뇨의 처리능률 향상과 주민편의 공중위생, 청결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년 1회이상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1. 등록 또는 허가요건 구비실태
2. 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정화조 청소업무 수행의 적정여부등에 관한 사항
3. 분뇨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실태
4. 기타 관계법규에서 정한 준수사항등의 이행여부

제17조(처리실적 보고) 분뇨관련 영업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및 정화조 청소에 관한 실적 등을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18조(업무의 위탁 등)

- ①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가 시설장비 노후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업무의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

는 날부터 6월이전에 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9조(행정위탁) 인접한 시·군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분뇨 등에 대한 수집·운반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인접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20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배출부과금·과징금·과태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국세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양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 의한 처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분뇨수집 수수료 요율표(제5조관련)

(단위:원)

부과대상	부과기준	수거요금	비 고
분뇨	18리터당	220	※ 수거요금에는 처리비 25원 포함

[별표 2]

정화조의 청소 수수료(제5조관련)

(단위:원)

구 분	용 량	계	청소요금	처리비용
기본요금	750리터	14,662	13,912	750
초과요금	100리터당	954	854	100

[별표 3]

가축사육제한지역(제11조제2항관련)

1. 도시계획 지역종

- 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 준공업지역

2. 관광진흥법에 의한 장흥관광지내

3. 자연공원법에 의한 북한산 국립공원 송추집단시설 지구내

[별지 제1호서식]

위생처리장 사용권 전표

제 호	절 제 호
위생처리장사용권 취	위생처리장사용권 선
일금 원	일금 원
직 인	
양 주 시 장	양 주 시 장

1. 용지규격은 32절지로 한다.
2. 100원권, 1,000원권, 10,000원권으로 구분 발행한다.
3. 1권을 10매 또는 100매 단위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가축사육허가(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일
사육자	주 소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사육장 소재지						
축사및가축 사육두수	축종	구분	축 사		사 육 두 수	
			부지면적	동 수	건 평	성 축
양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의 사육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육자			(인)			
양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가 축 사 육 허 가 서

제 호

1. 성 명 : (한자) 주민등록번호 :
2. 사육장소재지 :
3. 축사 및 사육두수

축종	구분	축 사			사 육 두 수			비고
		축사면적	동 수	면 적	성 축	자 축	계	

양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1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축사육을 허가함.

년 월 일

양 주 시 장

(변경사항)

(뒷면)